



# 의심되는 아동 학대와 방치 신고서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Rockville, Maryland 20850

MCPS Form 335-44  
2022년 7월

**기재 방법:** 구두 신고는 일반적으로 Child Protective Services(CPS)로 알려진 Child Welfare Services,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 전화번호 240-777-4417)에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약한 성인의 경우, 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APS) 240-777-3000로 전화하십시오. 전 응급 상황의 경우,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MCPD), 전화 911 또는 301-279-8000로 즉시 전화하십시오. 48시간 내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학대나 방치에 대해 신고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신고하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MCPS 교직원, 계약자, 자원봉사자는 피해자나 증인, 가해자를 추궁하거나 증언의 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1부—구두 및 서면 신고를 한 사람이 작성

이름 \_\_\_\_\_ 직함 \_\_\_\_\_  
학교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학교 주소 \_\_\_\_\_ 주소 \_\_\_\_\_ 시 \_\_\_\_\_ 주 \_\_\_\_\_ zip코드 \_\_\_\_\_ 학교 전화번호 \_\_\_\_\_ - \_\_\_\_\_ - \_\_\_\_\_

## 제2부-학생 또는 취약한 성인 정보 (신고자가 알고 있을 경우)

염려되는 내용에 표시하십시오. (해당하는 항목 모두에 표시)  학대:(구체적으로 명시:  신체 그리고/또는  성적)  방치  정신적 상해  
아동의 생년월일 \_\_\_\_/\_\_\_\_/\_\_\_\_ 나이 \_\_\_\_\_  
성학대의 경우, 학교장/수퍼바이저는 특수 희생자 수사과(Special Victims Investigations Division), Montgomery 카운티 경찰국(MCPD)에 즉시 전화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240-773-5400  
자녀 이름 \_\_\_\_\_ 성별:  여  남 인종 \_\_\_\_\_ 학년 \_\_\_\_\_  
주소 \_\_\_\_\_  
형제 자매 (알고 있을 경우) \_\_\_\_\_  
이름 나이 다니는 학교 이름 나이 다니는 학교  
이름 나이 다니는 학교 이름 나이 다니는 학교

## 제3부-학생 또는 취약한 성인을 돌보는 사람에 관한 정보 (신고자가 알고 있을 경우)

현주소에 함께 사는 학생을 책임지는 성인 이름: _____ 관계: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전화번호 #1 _____ - _____ - _____ 전화번호 #2 _____ - _____ - _____ 전화번호 #3 _____ - _____ - _____	현주소에 함께 사는 학생을 책임지는 성인 이름: _____ 관계: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_____ 전화번호 #1 _____ - _____ - _____ 전화번호 #2 _____ - _____ - _____ 전화번호 #3 _____ - _____ - _____
---	--

## 제4부-상해의 성격과 염려되는 점 (중요: 아동 학대 또는 아동 방치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MCPS Form 336-01 사용: MCPS Forms 부록, 필요한 경우.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JHC와 MCPS Regulation JHC-RA를 보십시오.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이 학대나 방치의 희생자라는 의심을 하게 한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적으십시오. 해당할 경우, 현재의 상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CPS 또는 APS와 관련되었던 이 전의 정보와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 또는 다른 가족들의 상해와 학대 또는 방치에 관련된 이 전의 정보를 적으십시오.

## 제5부-아래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구두(말)로 신고한 날 \_\_\_\_/\_\_\_\_/\_\_\_\_ 구두로 신고한 시간 \_\_\_\_:\_\_\_\_ 오전/오후  
구두로 신고했을 때 담당 CPS 또는 APS 직원 이름 (정자로 기재) \_\_\_\_\_  
학교장/수퍼바이저가 알게 된 날짜와 시간 날짜 \_\_\_\_/\_\_\_\_/\_\_\_\_ 시간 \_\_\_\_:\_\_\_\_ 오전/오후  
CPS 또는 APS 로 제출한 날짜 \_\_\_\_/\_\_\_\_/\_\_\_\_ 작성자의 서명 \_\_\_\_\_

### 제출(DISTRIBUTION):

- 사본 1: CPS, DHHS, 1301 Piccard Drive, Rockville, MD 20850, 전화: 240-777-4417; 또는 APS, DHHS, 401 Hungerford Drive, 3rd Floor, Rockville, MD 20850, Phone: 240-777-3000
- 사본 2: MCPS Systemwide Child Abuse Contact,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CESC, Room 55, 전화번호: 240-740-3215
- 사본 3: Office of the State's Attorney for Montgomery County, County Office Building, 50 Maryland Avenue, 5th Floor, Rockville, MD 20850;
- 사본 4: Special Victims Investigations Division,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7300 Calhoun Place, Suite 300, Rockville, MD 20855, Phone: 240-773-5400.

의심되는 학대와 방치 신고는 비공개로 분류되며 이 정보를 퍼트리거나 분산되거나 위에 명시한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사본으로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 내용을 밝히거나, 복사하거나 나누거나 이외에 어떠한 행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의심스러운 학대나 방치에 대해 신고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신고하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 정의

#### 학대란:

1.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의 영구적 또는 임시적 보호자나 돌보거나 보호 관리하는 사람이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에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상해를 포함한 신체적 상해 또는 정신적 상해를 주어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이 상해를 입거나 상해를 입을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영구적 또는 임시적 보호자, 돌보거나 보호 관리하는 성인이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또는 성적 괴롭힘과 성폭행 또는 근친상간, 강간, 또는 모든 수준의 모욕감을 포함한 모든 성적 착취, 남색, 비정상적이거나 변태적인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 학대 또는 착취에는 아이 또는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는 노출, 관음증, 성적 접근, 키스하기, 쓰다듬거나 어루만지기, 모든 수준의 성범죄, 강간, 남색, 매춘 또는 성매매, 밀매 또는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에게 포르노를 보이거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법으로 금지된 묘사를 하도록 허락, 장려 및 관련시키는 것과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을 등록된 성범죄자의 곁 또는 같은 공간에 계속 있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곳에서의 '아동', '학생'이란 나이에 상관없이 MCPS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및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칭합니다. Maryland 법이 18세 이상인 학생의 학대와 방치를 범죄로 여기지 않으나 MCPS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학대나 방치 신고절차와 똑같이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정신적 손상**이란,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을 장기 또는 임시로 돌보거나 보호관리하는 사람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정신이나 심리적 능력 기능에 식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심각한 장애를 말합니다.

**방치**,는 부모, 후견인이나 보호자,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 이웃,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결정권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또는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돌보거나 보호 관리하는 사람 또는 다음 상황에서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의 보호 관리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을 다음과 같이 방치하거나, 적절한 보호 또는 관리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보살핌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a)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의 건강이나 안녕을 해하거나 위협에 처할 경우.
- b)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의 정신적 상해 또는 정신적 상해의 실질적 가능성이 있을 경우.

**취약한 성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돌보기에 부족한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학대 또는 방치 신고의 피해자를 말합니다.

### 신고 요건

1. 이는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Board)의 정책으로, 모든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는 다음과 같이 모든 의심되는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의 학대 또는 방치를 개인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알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학대가 과거에 일어났다고 의심되는지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밝혀졌을 때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이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무관하게 또한, 아동 학대 또는 아동 방치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인지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아동 학대 또는 아동 방치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3. 구두로의 신고: **아동 학대 또는 방치가 의심될 경우**, 서면이 아닌 말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방치, 정신적 상해는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240-777-4417**  
아동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4시간)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 또는 방치 신고 전화: 240-777-3000**  
아동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성학대가 의심될 경우, 학교장/수퍼바이저도 전화신고를 해야 합니다: 240-773-5400**  
Special Victims Investigations Division,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4. 서면 신고는 CPS 또는 AP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48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MCPS Form 335-44, 를 사용합니다. 주소와 제출방법은 양식에 적혀있습니다. 본 요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5. 모든 신고는 일반 우편봉투에 봉하여 보내는 주소를 쓰고 confidential(비밀)이라고 써서 보냅니다.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앞으로 보낼, 신고서가 들어있는 봉투는 일반 사무실 내 메일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6. Maryland 법에 따르면 좋은 의도로 학대와 방치를 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사법절차결과에 관여한 사람 또는 참여하는 사람은 아동 학대나 방치 신고를 하게 되거나 조사, 사법절차 결과에 연관되지 않는 한 민사적 책임과 형사처벌에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7. MCPS에서 전문성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로 아동 학대, 아동 방치를 보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보고를 막거나 방해하는 경우, 해고 또는 계약의 해지 및 봉사 기회의 박탈을 포함한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및 다른 자격증 발급 기관이 발급한 자격증과 수료증도 Maryland 법에 따라 박탈, 취소될 수 있습니다.